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근거 마련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44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과 현 준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1344)	1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3
※ 참고자료	9
1.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근거 법령	9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013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07. 03.
3. 회 부 일 : 2024. 07.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안 제1조),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 대상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u>운용</u> 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운용 및 지원</u> ----- -----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 12. (생략)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도시철도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u> 3.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¹⁾는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전액 감면하고 있음(참고1.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근거 법령’ 참조).

< 현행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 운임 감면 현황 >

근거법	규정 내용	구분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복지법 (고령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 에 대하여 ...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다.	도시철도	100% 할인	100% 할인	100% 할인
장애인복지법		철도	30% 할인 (주말공휴일 제외)	30~50% 할인	50% 할인 연 6회 무임
국가유공자법		시내버스	유료 (일부 지역 무료)	유료 (공영버스 100%)	100%
		시외버스	유료	유료	30~70% 할인 (등급 차등)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인구 고령화 심화²⁾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무임수송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

1)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024.7월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명(19.5%)을 돌파

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으며, 도시철도와 기능상 유사한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국가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³⁾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⁴⁾.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43호, 2024.7.3.발의)된 바 있음.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역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4)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2건, 제18대 국회 1건, 제19대 국회 1건, 제20대 국회 3건, 제21대 국회 7건 발의되었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343호)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제12호 신설

- “공익서비스”란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31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신설

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한다.

②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과 환급액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제31조의3(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감면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해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⁵⁾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⁶⁾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 (찬성의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② 공익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동일한 형태의 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도시철도망이 광역화됨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 ④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악화는 안전투자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 ⑤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반대의견)

- ①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므로 운임감면 등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먼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지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 범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상황, 지속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철도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제21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 등 5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20.11.17).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20.11.19)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반대의견 제시와 대체토론의 결과 당일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이후 간사 협의에 따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관한 개정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되었으나('20.12.3)⁷⁾, 한 차례 논의⁸⁾ 후 더이상

② 도시철도의 건설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④ 「노인복지법」 등 운임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운임의 감면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6) 유사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079호, 2020.6.3.)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 연평균 9,045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비용추계서 회답일 : 2020.6.23., 2021~2025년 기준)

7) 소위 의결 대안 중 노후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 보조 등 내용은 그대로 의결하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관한 4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함.

진행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도시철도는 지자체 시설로, 무임 수송 시행 및 운임 수준 등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운임 감면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등 운영기관 지원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함. 시설의 운영 주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철도(코레일 운영)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국비 지원 시 도시철도를 운행 중인 서울 등 6개 특·광역시로 혜택이 한정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⁹⁾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 노후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의 일부 정부 보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박홍근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

8)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1.12.22)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에 관한 4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국토부의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등,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결정됨.

9) 도시철도 무임비용은 연간 5~6천억원 수준이며, 2024.7월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명(19.5%)을 돌파하는 등 인구 고령화 심화로 무임비용 지속 증가 전망.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